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

2022. 10. 19. (수)

발제자 :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이 형 섭



논 의 배 경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강화된 유해성심사로
유독물질 지정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의 부담 호소 증가

경 과

'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
(민·산·관)”을 통해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22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및
토론회 개최

유독물질을 독성유형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시설관리, 영업자관리에 관한
규정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만성 · 생태유해성물질의 차등관리

혼합물 관리 및 기타

3. 개편 기본방향(안)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물질 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

4. 주요 개편내용(안)

4-1. 유독물질을 독성유형에 따라 구분

- 유독물질을 독성유형별로 구별·지정(화평법) 및 지정기준 개편(화평법 시행령)

현행 지정기준	
유독물질	가~다.급성(경구·경피·흡입) 독성(구분1~3),
	라. 피부부식성(구분1A),
	마. 수생환경유해성 급성(구분1)
	바. 수생환경유해성 만성(구분1)
	사. 반복노출독성(구분1),
	아. 변이원성(구분1)
	자. 발암성(구분1)
	차. 생식독성(구분1)



개정 지정기준(안)	
급성 유해성 (가~라)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구분1~3) 피부부식성(구분1A·B·C),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구분1)
만성 유해성 (사~차)	반복노출독성(구분1), 변이원성·발암성·생식독성(구분1)
생태 유해성 (마, 바)	수생환경유해성 급성·만성(구분1)

-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화관법 시행규칙)

4. 주요 개편내용(안)

4-2.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관리 차등화

기본방향

유독물질의 취급단계별 적용되는 관리수단별
목적·취지를 고려하여 위해도(유해성·취급량)에 따라
적용대상·수준을 차등화

화관법에 따른 관리형태(수단)

적용대상·수준 차등화 방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해도(유해성, 취급량) 고려	既적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판매자 관리	위해도(유해성·취급량), 시설유무 고려	→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및 시설검사		위해도(유해성·취급량) 고려	→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등		위해도(유해성·취급량) 고려	→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표시 위치·내용, 목적 고려	→ 일부개편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등 유통관리 및 화학사고 즉시신고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필요	→ 현행 유지

4. 주요 개편내용(안)

4-2.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차등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표시 차등화(화관법 시행규칙)
- 물질 특성에 따른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 적용대상(화관법) 차등화
- 위해도(유해성, 취급량) 등에 따른 검사·안전진단 주기 등의 차등화(화관법 및 시행규칙)
- 영업신고제도 도입(화관법) 및 허가·신고에 따른 요건 차등화(화관법 하위법령)

현재 차등관리 적용 영역

차등관리 적용 검토 영역

	안전관리수준 차등화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관리			영업허가/신고 허가신고면제	정기검사 주기
	유독물질	사고대비 물질	규정수량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자체점검 특별이행점검	서면점검	현장점검		
관건사업장	유독 물질	사고대비 물질 (高 독성 또는 高 인화성 등 단계적 확대 필요)	상위 규정수량 (Upper Tier)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1군)	적용	적용	적용	한번에 1톤 초과하여 운반하는 자 → 영업 허가	1년
			하위 규정수량 (Lower Tier)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2군)			미적용		미적용
일반사업장	유독 사고대비 물질 (低 유해위험성)	기준 검토중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면제)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 시약판매업 → 영업 신고 (도입검토)	4년 (검토)	
							영업 허가 신고 면제 (도입검토)	면제검토	

4-3. 만성·생태유해성물질 및 제한·금지물질 관리

**확산 가능성이 큰 만성독성물질은 급성독성물질과
동일하게 관리(화관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만성독성물질의 농도에 따른 관리 차등화(화관법 시행규칙)

**제한·금지물질 등 용도관리가 목적인 물질은
시설검사 등에서 제외(화관법)**

4-4. 중장기 검토사항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과민성물질의 지정·관리

유독물질 목록(고시)삭제

수용체 (근로자, 환경, 주민 등)
관점을 고려하여
만성·생태독성물질의 관리체계 보완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 및
관리방안 마련



의견수렴

'22.10.20 ~11월초

종합토론회

'22.11.16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제도화 추진

'23~

